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428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4.

발 의 자:배준영・이만희・金炳旭

김은혜 • 이철규 • 김정재

이해식 · 곽상도 · 이명수

박성민 · 정동만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, 교구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.

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가루날림의 위험이 있는 분필칠판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등 적절한 시설·설비·교구가 갖춰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·설비·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시설·설비·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 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 도록 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(안 제30조의9 신설).

법률 제 호

초・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초·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제1절에 제30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0조의9(시설·설비·교구의 점검 등)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 ·설비·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야 한다.
 -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·설비·교구가 노후 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, 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 30조의9(시설·설비·교구의 점검 등)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시설·설비·교구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시설·설비·교구가 노후화되거나 훼손되었을 때는지체 없이 보수 또는 교체 등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④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대상,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
	<u>령으로 정한다.</u>